2019년도 제18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o 일 시: 2019. 9. 16.(월요일), 10:00
- o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o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강상욱, 백대용, 손승우(분과위원장) 위원
-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184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4,684건(안건번호 제2019-112280호~113072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게시물에 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 권고하기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손승우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89회 저작권보호심 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184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회의록 15쪽, 16쪽, 20쪽의 카페명 공개 여부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해당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자는 의견임
- B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 인하며 카페명은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건번호 제2019-112280 호~113072호로 총 4,684건임

먼저 검토보고서 4쪽의 표를 보면 온라인서비스명란에 '모바일〇〇〇 〇'과 '〇〇〇〇'이 분리되어 기재가 되어 있음

위 온라인서비스는 마치 2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즉 하나의 법인이 제공하는 것임

보호원 내부 시스템에서 PC용 웹하드와 모바일용 웹하드가 분리되어 있어서 따로 기재가 되고 있음

안건번호 제2019-112280호~112282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음원파일을 네이버 블로그에서 첨부파일로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12280호는 일본 애니메이션 엔딩 곡의 음원을 첨부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심의대상 게시물의 음원은 일본에서 2015. 5. 27. 발매된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250에 판매 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12281호는 일본 애니메이션 오프닝 테마 곡의 음원파일을 첨부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심의대상 게시물의 음원은 일본에서 2018. 12. 13. 발매된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음악 사이트에서 유료 제공 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12282호는 일본 애니메이션 오프닝 테마 곡의 음원파일을 첨부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심의대상 게시물의 음원은 일본에서 2018. 12. 11. 발매된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음악 사이트에서 ¥250에 판매 중임

저작권법 제3조 제1항은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은 베른협약 및 WIPO 저작권 조약, TRIPs 협정 등의 체약당사국이 므로 심의 안건의 저작물을 우리나라 저작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 호, 즉 내국민대우할 의무가 있음

(해당 블로그를 제시하면서)해당 블로그는 다수의 애니메이션 주제가 를 첨부파일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2019-112280호~112282호 일본 애니메이션 음원파일 게시물에 대한 의 격을 구함
- A 위원 : 안건번호 제2019-112280호 게시물 하단에 있는 글이 제공하는 음원파일의 가사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음원파일의 일본어 가사와 우리말 가사를 함 께 제공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C 위원 : 블로그 운영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하여 심의대 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B 위원 :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12280호~112282호 는 일본 애니메이션 음원파일의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는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만장일치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안건번호 제2019-112283호는 익명의 민원인이, 안건 번호 제2019-112284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네이버 이용자가 영화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12283호는 '★★★ ★★★: ★★★ ★★★★(★★★★)' 전체분량(1시간 50분 41초, 우리말 자막 포함)을 제공하고 있으며 심의일 현재 재생 횟수는 3,177회임 참고로 위 영화는 일본에서 2019. 3. 1. 개봉하였고, 국내에서 2019. 8. 14. 개봉 예정이었으나 일본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인해 개봉이 취소됨 안건번호 제2019-112284호는 '☆☆☆ ☆☆☆☆: ☆ ☆☆(☆☆☆☆)' 전 체분량(1시간 22분 43초, 우리말 자막 포함)을 제공하고 있으며 심의일 현재 재생 횟수는 12,012회임

참고로 위 영화는 미국에서 2019. 9. 2. 개봉하였고, 국내에서 개봉 전임 우리말 번역 및 자막 제작자에 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아니함 (해당 블로그를 제시하면서)해당 블로거는 다수의 해외 애니메이션 영 상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12285호는 보호원이 자체 조사한 건으로 블로그 이용자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스트리밍 형 태로 블로그에 게시한 사안임

안건번호는 하나이지만 심의대상 게시물은 총 23개임 참고로 민원인(실명)이 2019. 8. 5.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 지난 제1분과 위원회(2019. 9. 5. 개최, 제2019-180회)에서 심의를 하였고, 본 건은 보 호원이 후속조치로 해당 블로그를 추가 모니터링 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2019-112283호~112285호 영상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블 로그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민원인이 신고한 제2019-112283호, 112284호는 국내 미개봉 영화인데 화질이 굉장히 좋아 보임
- B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며, 위 최신 영상복제물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 워 보임
- C 위원 : 제2019-112283호, 112284호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동의함
- A 위원: 안건번호 제2019-112285호(총 23개 게시물)와 관련하여, 지난 제1분과위원회(2019. 9. 5. 개최, 제2019-180회)에서 심의를 하였는데 보호원이 후속조치를 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민원인의 신고 내용을 보면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1화~99화까지 업로드가 되어있다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음 지난 제1분과위원회(2019. 9. 5. 개최, 제2019-180회)에서는 민원인이 신 고한 네이버블로그의 '블랙 클로버' 복제물 총 16개에 대한 심의를 먼
 - 고한 네이버블로그의 '블랙 클로버' 복제물 총 16개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였고, 민원 취지에 따라 나머지 게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자체조사를 하여 총 23개 게시물을 심의 요청함
 -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면서)총 23개 게시물을 보면 동일한 복제·전송자가 각 게시물에서 '블랙클로버' 제77화부터 제99화까지 제 공하고 있음
 - '블랙클로버'는 일본 TV도쿄에서 매주 화요일에, AniBox에서 매주 금

요일에 방영 중인 일본 애니메이션임 참고로 해당 블로그는 지난 번 시정권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다수의 애니메이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됨

- B 위원: 해당 블로그에는 '원피스', '보루토' 등 유명한 저작물 제공이 많아 보이며, 블로그를 운영자는 시정권고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복제물을 삭제할 생각이 없어 보임
- C 위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며,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면 상단과 하단에 광고가 굉장히 많아 보임 블로그 운영자는 광고수익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자체적으로 복제물을 삭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임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블로그를 제시하면서)해당 블로그는 심의대상 게시물 외에 다른 애니메이션 게시물을 약 200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게시물 상단, 하단, 좌측을 보면 총 7개의 광고가 게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심의일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의 주소를 입력하면, '블랙클로버(제77화부터 제99화까지)' 총 23개 게시물 모두 "잘못된 주소이거나, 비공개 또는 삭제된 글입니다"라는 메시지만보임

그런데 해당 블로그의 '블랙클로버' 게시판에는 2019. 9. 11. 게시된 "[HD]블랙클로버100화" 제목의 게시물이 있음

한편 심의위원회는 심의 시점에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삭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게시물의 경우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근거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가결하고 있음

그런데 나중에 민원이 다시 제기되어 해당 블로그를 방문해 보면 복 제물이 다시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게 경고를 하여 자율적 시정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데, 그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때가 있음 본 건의 경우에는 99화까지 삭제를 하고 100화를 업로드한 것인지 아니면 99화까지 비공개를 하고 100화를 업로드한 것인지 알 수 없음

- A 위원 : 본 건과 같은 복제·전송자에 대하여 계정정지 시정권고의 필 요가 있다는 의견임

- B 위원 : 동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네이버 블로거에 대한 계정정지 시정권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음 전체위원회에서 13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계정정지 시정권고 심의가 있을 예정인데, 보호원은 웹하드 사이트에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반복해서 올리는 헤비업로더에 대해서만 계정정지 시정권고 심의를 요청하고 있음

참고로 헤비업로더는 여러 개의 웹하드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이 때문에 계정정지를 당하여도 헤비업로더는 타격이 크지 않 을 것으로 보임

심의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동일한 복제물을 업로드한 웹하드 아이디가 Kcopa1, Kcopa2, Kcopa3과 같은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그와 동일한 아이디가 여러 개의 웹하드 사이트에서 발견됨 웹하드 아이디에 대한 계정정지를 권고할 때도 이메일 전용계정은 제

외하고 있는데, 네이버 블로거에 대해 계정을 정지하게 되면 이메일 이용이나 다른 서비스 이용까지 제한될 우려가 있음

- A 위원 : 본 건의 경우 이메일 계정과 다른 서비스 이용이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특정 아이디의 블로그 이용 과 이메일 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 히 알지 못함
- B 위원 : 이메일과 연동된 계정을 분리하는 것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해 보임
- A 위원: 보호원에서 계정이 이메일로 되어 있는 사이트에서는 계정정지 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기억함 포털사이트 이용자의 계정정지에 관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음 하지만 본 건처럼 시정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블로그에 수 백 개가 넘는 불법복제물을 계속 올리는 블로거에 대해서는 계정정지 시정권고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성원영 전문위원 : 인터넷 접근권을 제한 또는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호원은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은 웹하드의 헤비업로더들에 한정하여 계정정지 시정권고 심의 요청을 하고 있음 심의위원회는 상습성, 복제·전송량, 시장대체가능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헤비업로더의 경우에 가결하고 있음

- A 위원 : 본 건의 복제·전송자는 20회 정도 시정권고 조치를 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블로그에 업로드하고 있어 심각해 보임
- C 위원 : 본 건은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A 위원 : 보호원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에서도 자정노력을 기울일 필 요가 있음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보임 영상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안건번호 제2019-112283 호~112285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만장일치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건번호 제2019-112286호~112325호(총 62개 게시물)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웹하드 사이트의 이용자가 다수의 만화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민원인이 직접 제출한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실행화면을 제시하면서)민원인은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직접신고하였고,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모두 민원인이 수집한 것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2019-112286호~112325호 웹하드 사이트의 만화 불법복제물에 대한 의 견을 구함
- C 위원 :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전송하고 있는 것으

로 보임

- B 위원 : 해당 만화는 모두 판매 중인 저작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보임
- A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며, 이의 없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2019-112286호~112325호는 만화 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는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만장일치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12326호~113072호는 모두 단순 복제한 복제물을 웹하드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이용에 무단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영화 '엑시트'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12326호는 웹하드에 게시된 것이고, 112333호는 모바일 웹하드에 게시된 것으로 2019. 7. 31. 개봉한 최신 국내 영화임

해당 저작물은 긴급 대응 저작물인데, 보호원의 내부 규정인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 업무 처리 규칙」은 현재 상영중 또는 상영예정인 영화 저작물이나 정식 공표예정인 음악저작물 등과 같이 불법복제물 유통에 따른 피해가 크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호원이 인정하는 저작 물을 '긴급 대응 저작물'로 보고 있음

(게임 '트로피코'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12769호는 2014년 5월에 출시된 Tropico 5 이며, 약 30,000원에 판매되고 있음

안건번호 제2019-113068호는 2019년 3월에 출시된 Tropico 6이며, 약 54,000원에 판매중임

- C 위원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동의하며, 오늘 심의에는 '엑시트' 영화가 많아 보임
- B 위원 : 모두 단순 불법복제물이므로 이의 없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A 위원 : 모두 불법 복제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심의일 현재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C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12326호~113072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를,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12280호~112325호는 불법복제물등 삭제 또

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19-112326호~113072호는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o 손승우 분과위원장이 제18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 함

2019년 제18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9. 23.

분과위원장 손승우

위원 강상욱

위원 백대용